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 모집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1) 기관 블로그, 인스타그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센터정보 게시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 기관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daall0153>)
- 2)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 3) 기관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
- 4)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계약기간

-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 2)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 3)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담 및 서비스신청 → 서비스 사전조사 → 계약체결
→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서비스 제공
→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모니터링

-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
 -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시간,일자,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6.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률

구분	일반 대상자	의료 대상자	경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률	15%	6%	6% 또는 9%	0%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한도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 2026년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3) 2026년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당 시간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15%	9%	6%
30분	17,450	2,618	1,571	1,048
60분	25,320	3,798	2,279	1,520
90분	34,120	5,118	3,071	2,048
120분	43,430	6,515	3,909	2,606
150분	50,640	7,596	4,558	3,039
180분	57,020	8,553	5,132	3,422
210분	63,530	9,530	5,718	3,812
240분	70,080	10,512	6,308	4,205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 위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8. 계약의 해지

-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2) 서비스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공포분위기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희롱,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기타 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4) 절차 및 기한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본 조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